
산학협동재단
2013년도 신진교수연구비
지원대상자 추천요령

2013.

**재단
법인 산 학 협 동 재 단**

산학협동재단

2013년도 신진교수연구비 지원대상자 추천요령

※ 본 재단은 2013년도부터 신진교수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한 산학협력 우수학자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포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
I 지원내용

1. 지원연구과제

- (1) 산학협동재단 「지정연구과제」 (붙임 1. 참조)
- (2) 산업계와 연계된 경상학 및 과학기술분야 자유과제 (의, 약학계 제외)

2. 연구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함.(2013. 6 ~ 2014. 5)

(단, 과제의 특성에 따라 2-3년의 연구기간을 요하는 연구과제도 신청 가능하며, 매년 진척상황을 심사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)

3. 지원대상 :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용된지 5년 이내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

4. 지원규모 및 방식

- (1) 예산 : 1,025백만원 (이공계열 : 경상계열 지원 비율 약 70:30)
- (2) 과제당 지원금액 (1년과제 기준)

구분	일반 과제	M/F 과제
이공계열	30백만원 내외	50백만원 내외
경상계열	15백만원 내외	30백만원 내외

※ 기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Matching Fund 과제는 이공계열은 총 연구비의 40% 이상, 경상계열은 50% 이상 기업 측이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.

1. 신청자격

- (1)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용된지 5년 이내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
- (2) 연구비 지원신청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학술지 등에 등록 완료된 연구실적이 2편 이상 있어야 함.

2. 신청자격의 제한

- (1) 타 기관에서 동일과제로 지원받아 연구에 참여 중인 자
- (2) 본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, 연구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원

3. 신청기한 및 방법

- (1) 신청기한 : 2013년 5월 10일 (도착지 기준)

(2) 신청방법

-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(또는 산학협력단장)은 상기 II-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아래 구비서류를 대학단위로 일괄 제출

i) 연구비지원 신청서	서식 1-1	v)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	서식 1-4
ii) 연구진 명단	서식 1-2	vi) 연구비 공동부담 협약서 (기업체와 공동부담하는 Matching Fund제에 의한 연구과제인 경우)	별첨 2
iii) 이력서	서식 1-3		
iv) 연구계획서 1부	별첨1	vii) 연구업적내역서	자유형식

- (3) 제출처 : (우)137-86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(서초동)
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실 앞

Ⅲ

과제선발 기준 및 절차

□ 과제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

- (1) 산학협동재단 「지정연구과제」
- (2) 기업체와 공동부담하는 Matching Fund에 의한 연구과제
- (3) 우리나라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
- (4) 학제간 융합연구과제 등

□ 각 학교의 추천인이 추천한 자 중에서 본 재단 소정 심사위원회에서 과제를 엄선, 지원비를 사정하여 이사장의 결재로서 확정하며, 이 내용을 대학단위로 추천인(대학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)에게 일괄통지.

Ⅳ

연구비 지급방법

□ 과제별 지원사정액은 추천인 앞으로 일괄 송금하되, 아래와 같이 연구착수 진행상황에 따라 1, 2차로 분할지급 함.

구 분	지급시기	지급액
1차분	연구착수 시	지원액의 50%
2차분	중간보고서 접수 후	나머지 50%

□ 기업체에서 Matching Fund를 약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비총액이 확정된 후,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체가 연구비 분담자금을 본 재단 앞으로 송금하여야 함.

1. 보고서의 제출

(1) 중간보고서 제출

- 제출시기 : 제 1차 연구비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제출방법 :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(별첨3 참조)를 받아, 대학단위로 본 재단에 일괄제출하여야 함.

(2) 최종보고서 제출

- 제출시기 :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
- 제출방법 : 연구최종보고서는 학술지(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)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-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종료 후, 1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(단, 학술지 게재가 안되었을 경우, 차후 본 재단의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.)
 - 단, Matching Fund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보고서는 단행본 또는 특허,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으로도 대체할 수 있음.

※ 최종보고서 제출 서류

제출서류	비 고
①게재된 학술지 1부	별쇄본도 가능 (※학술지 게재 전 단행본 1부 우선제출)
②연구결과가 수록된 CD 1부	한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 (영문으로 된 보고서는 한글요약본 별도 제출)
③Matching Fund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보고서 제출시에는 Matching fund 제공업체의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(별첨4 참조)	

- (3) 산업재산권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음. (사유서 제출 요함)
- (4) 최종보고서에는 반드시 ‘산학협동재단’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 함. (*학술지에 게재될 때에도 동일함)

2. 준수사항

(1) 연구신청자 관련

- ①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(또는 산학협력단장)에서는 제Ⅱ항의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의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.
- ② 연구기간 중 질병, 사고 등으로 연구 중단하여야 할 때, 또는 소속기관 변경 등 신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.

(2) 연구과제 관련

- 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의 제목과 주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.
- ② 제Ⅴ항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.
- ③ 본 재단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필요시 추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연구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④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허위 및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,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본 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.

VI

기타사항

- (1) 본 재단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- (2) 본 요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거나, 그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.
- (3) 재단은 연구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Matching fund 과제 중 기업의 특허나 영업권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자의 요청시 ‘대외비’로 관리 함.

VII

특기사항

- 본 재단에 제출한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의 내용 기재에 있어 사실과 상이하거나 본 재단에서 요구하는 제 V 항에 명시한 추천인의 의무 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.
- 기타 세부사항은 본 재단 산학협력실 【(02)-3415-1234, 1240, 1250】으로 문의하시기 바람.

2013년도 산학협동재단 「 지정연구과제 」 일람표

연구과제명	연구내용
<p>① FTA 체제하에서의 한·중·일 산학협력활성화 방안 연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산학협력의 종류 - 한·일 산학협력의 추진전략 및 사례조사 - 한·중 산학협력의 추진전략 및 사례조사 - 한국대학 포함 국제산학협력과 일본, 중국대학에만 접목한 산학협력 비교검토 - 국제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정책적 제언 (사례발굴을 중심으로 : 한국기업과 정부 정책에 기여)
<p>② 대학산학협력관련 과세문제 연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비, 인건비 등 관련 세금 - 산학협력단 등 전담조직 관련 세금 - 특허 유지관리비 등 기술이전 손익 관련 세금 - 학교기업, 학내벤처, 창업보육센터 등 세금문제
<p>③ 인문학 기반 대학 - 기업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문학 융합형 ‘일자리 플랫폼’ 아이디어 연구 · 인문학이 연계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 설계에 관한 연구 - 인문지식을 사회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삼기위한 모형연구 및 개발 - 인문브리지(Human Bridge) 연구센터 설치기반 연구 · 인문계열 대학 학과 대상, 인문기반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및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

연구진명단

연구제목 :

성명	소속	직위	전공	서명 또는 날인	비고

※ 공동연구진의 이력서(서식1-3) 및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(서식1-4)를 반드시 첨부할 것

이 력 서

사 진	성 명	한 글 : 한 자 :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학 교 : 자 택 :		
	연락처	교수실 : 자 택 :	핸드폰 : 이메일 :	
소 속 학 회	기 간	학 회 명		직 위
	~			
	~			
	~			
학 력	기 간	학 교	학 과	학 위
	~			
	~			
	~			
	~			
	~			
경 력	기 간	근 무 처	학 과(부 서)	직 위
	~			
	~			
	~			
	~			
	~			

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본인은 산학협동재단에 제출하는 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·평가에 있어 재단이 본인의 학력, 경력,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산학협동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.
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지원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평가

2. 수집 개인정보 항목

인적사항, 학력, 경력, 연구업적,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등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연구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

4. 유의사항

연구자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.

년 월 일

연구책임자 성명 (서명)

연구계획서 작성요령

1. 연구계획서는 신진교수연구비 신청서(서식1-1)와 동일한 규격의 용지(A4)를 사용하여 작성한다.

2. 연구계획서는 다음의 순서로 상세하게 작성한다. (20page 내외)
 - (1) 연구과제명
 - (2) 연구목적
 - (3) 연구범위
 - (4) 연구내용 : 반드시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학계의 연구동향 및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기술할 것

 - (5) 연구방법
 - (6) 소요예산 (인건비, 직접비, 간접비의 내용 및 산정, 집행기준을 상세히 작성)
 - (7) 참고문헌
 - (8)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
 - (9) 연구진명단(서식1-2) : 이력서(서식1-3)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(서식1-4)를 반드시 첨부할 것

 - (10) 연구업적내역서(최근 5년이내)

3. 신진교수연구비 신청서, 연구계획서, 연구비공동부담확약서 순으로 철할 것.

2013년도 학술연구과제 중간보고서

연구책임자	대학명		기초연구진	대학명		직위		성명	
	직 위			대학명		직위		성명	
	성 명			대학명		직위		성명	

연구 제목	
연구 진행 상황 (요약)	<p>※진도설명 및 중간보고 자료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것</p>

연구진행의 중간 결론	(※별지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첨부할 것)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연구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연구비총액	일금 만원	기수령액 일금 만원

년 월 일

연구책임자

(인)

<별첨4>

Matching Fund 참여업체의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서				
과 제 명				
연구책임자	대 학 명	학 과 명	성 명	연 락 처
참여기업	업 체 명	대표자명	주요생산품	연 락 처
연구결과에 대한 참여기업의 의견	<p>(※별지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첨부할 것)</p>			

상기 연구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의견이 위의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.

년 월 일

참여 기업체명

대표 (인)

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귀중